

제안설명서

- 일 시 : 2021. 9. 6.(월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「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제2648호)

행 정 국

-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.
- 존경하는 **이현찬** 위원장님, **채유미·한기영** 부위원장님.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- 의안번호 제2648호 「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
 - 상위법인 「도로명주소법」이 전면개정('21.6.9. 시행)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고,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여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,
- 주요 개정사항은
 - 주소 사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, 기존의 도로명주소 외에 버스·택시정류장 등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, 제명을 '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'로 변경하였습니다.

- 또한, ‘도로명주소위원회’를 ‘주소정보위원회’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, 위원장을 ‘행정1부시장’에서 ‘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’으로 변경하였고,
- 그 밖에 위원회의 임기, 기능, 회의소집, 직무대행, 간사, 회의록 작성·관리,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.

도로명주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9. 6.

행정국장 김 상 한